

시설급여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

Q83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 도구에서 와상어르신에 대한 표시가 궁금합니다.

- 위험도 평가 도구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제공해드리지 않으며,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욕창 위험 등의 수준을 파악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위험도 평가도구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해석 등은 관련 논문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

Q84

인지기능 평가도구 CIST가 나왔는데 MMSE 이용해도 되나요?

- 인지기능상태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는 기관의 운영상황에 맞춰 타당한 평가도구를 근거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CIST 외에도 검증된 평가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CIST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도구로 타당성 검증 완료되었으며, 도구 이용 위한 교육 및 사용 방법은 중앙치매센터(☎1899-9988) 문의 바랍니다.
- 현재 MMSE의 적법한 사용방법, CIST 사용 전 교육수강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확인할 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85

통합적 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수립 시 입소당일까지 실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평가지표30(29) 통합적사정, 평가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은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에 따라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전(입소당일포함)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2019.6.12.에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만,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사전공개에 따른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수급자가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입소할 경우 마지막 휴일의 익일까지 작성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Q86

**시설급여 평가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급여제공계획서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휴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통합적 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서 수립에 대해 가능한 해당직종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유급휴가 등에 의한 미작성은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Q87

**시설급여 평가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급여계획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등급외자 입소 시에 욕구사정을 포함한 통합적 사정과 그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했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반드시 통합적 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 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 등이 최초 입소 시점과 비교하여 변화가 있다면 욕구사정을 포함한 통합적 사정을 재실시하여 이를 반영한 급여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88

**시설급여 평가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욕구사정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갱신이나 등급변경
시에도 욕구사정을 작성하여 급여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수급자의 경우 통합적 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서는 연 1회 이상 작성되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갱신 또는 등급변경 후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상 수급자 상태 변화가 있고, 욕구의 변화 등이 파악된다면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검사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계획을 재작성하여 현 수급자 상태에 맞게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Q89

**시설급여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
소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재입소시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급여개시전(입소당일 포함)까지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안내드립니다.**

Q90

**시설급여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동일법인·동일대표의 시설급여기관으로 수급자 전원 시 통합
적 사정,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의 **시설급여기관**으로 전원 시 '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평가지표19(18) 감염병관리 참고)'을 제외한 그 외 평가지표는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Q91

**시설급여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입소한 수급자가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 재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수급자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 변경 및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장기간 입원 후 복귀했다면 입원 전 상태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가 적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욕구사정을 포함한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변경된 급여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92

급여제공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서 작성한 것만 인정하나요? 통보일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 평가지표31(30)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2021년 시설평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업무포털, 기관 별도 전산, 별도 수기 기록지 등에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한 확인사항이 포함되면 모두 인정합니다.
- 다만, 전산의 경우 수급자별로 관리하며 개별 로그인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며 전산 및 수기기록지 모두 인지기능이 양호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됩니다(비대면의 방법으로 제공했을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전문이 제공되었음이 증빙되어야 하며 추가로 유선상담이 필수로 이뤄져야 함).
- 아울러, 21년 평가 매뉴얼에서 상 급여제공계획서 공단 통보는 확인하지 않으며 급여제공계획서는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93

급여제공계획서 당일 작성해야하는데 보호자에게도 당일 제공해야하나요?

- 급여제공계획서의 보호자 제공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의 내용에 대해 급여제공 시작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다만 당일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사유가 급여제공계획서 제공에 대한 기록을 통해 확인될 시 평가 시 인정, 비대면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우편물 발송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함)

시설급여 평가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94

입소자 신규계약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밤 입소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불가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 결재 늦음으로 당일 반영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의 평가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기준①은 기존 통합적사정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추가로 반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입소자 신규계약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미지참, 늦은 입소 등으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및 열람승인이 불가하여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통합적 사정만이라도 반영하여 급여개시 전(입소 당일포함)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수립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위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미반영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받았을 때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른 사유가 있을 시 반영하여 재수립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95

급여제공계획서 제공 시 보호자의 시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급여계획서를 우편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에서는 우편물 발송내역 및 상담기록 등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다만, E-mail 전송(보호자의 E-mail임이 확인되어야 함), 문자 발송 및 SNS 메신저 제공도 인정되나 제공 시 급여제공계획서 전송을 전송했음과 제공 후 추가로 보호자에게 유선 안내하였는지 평가 시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 비대면 제공 시 유선을 통해 추가 안내가 필수로 이뤄져야 하며 추가 안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만 한 경우는 불인정 합니다.
- 비대면 제공 시 제공에 대한 보호자 서명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2(31) 급여제공 결과평가

Q96

하반기 급여제공 결과평가 일정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2018년 1월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2018년 12월에 급여 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 급여제공 결과평가는 반기별 1회 실시하므로 상반기에 입소한 수급자는 하반기에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급여계획을 재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정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결과평가를 하는 것 보다 개별적으로 6개월 간격으로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2(31) 급여제공 결과평가

Q97

급여제공 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급여제공 결과를 평가할 경우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가 확인되도록 관련 기록을 작성한 경우 인정합니다. 따라서 급여제공모니터링을 충실히 작성하여 급여제공 결과 평가의 확인 사항(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이 확인되면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32) 사례관리

Q98

기관 운영을 시작한 달에도 사례회의를 실시해야 하나요? 월도중에 정원 변경 시 사례회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 사례회의 실시 주기는 기관의 정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30인이상 시설은 월 1회이상, 10인이상 30인미만 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10인미만의 기관은 반기별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개시월이나 정원변경 시 다음 달부터 정원에 따른 사례회의 실시주기를 적용합니다. 분(반)기의 마지막 달에 개시 및 정원변경이 있을 시 다음 분(반)기에 적용하며 변경 해당 분(반)기는 정원 변경 전의 주기에 의해 실시함을 확인합니다.
ex) 3월에 15명에서 35명으로 정원변경 시 1-3월까지는 분기 수행 4월부터 매월 실시 확인

시설급여 평가지표33(32) 사례관리

Q99 사례회의 시 회의 내용에 발언자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 사례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특성이 반영된 급여제공을 위해 직종별 급여제공 직원이 각 1명 이상 참석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 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항목을 기록하여야합니다.
- 수급자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종 및 발언자명을 명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32) 사례관리

Q100 사례회의 결과 반영 시 꼭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해야 하나요?

- 30일 이내에 사례회의 결과를 급여에 반영해야하며 반영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회의 내용 및 결과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혹은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에 반영한 내용을 단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례회의 대상선정 사유 및 회의 내용, 결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대상자는 다양한 문제나 욕구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이므로 회의 결과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거나 급여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수급자라면 사례관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32) 사례관리

Q101 신규 입소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

- 사례회의 대상자는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초기 입소하여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입니다.
- 2021.1월까지의 급여제공계획이 세워지기 전인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회의를 거쳐 그 내용을 최초 작성된 급여계획에 반영했다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그러나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에 따라 2021.2월부터는 신규 수급자에 대해 통합적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이 급여개시전(입소당일 포함)에 이뤄져야 하므로 사례회의 결과 반영에 대해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또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32) 사례관리

Q102

신규수급자가 부적응으로 입소 하루 만에 퇴소할 때도 이용 종료 상담 및 연계기록지 제공을 수행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33(32)사례관리 기준③ 연계기록지 작성은 신규수급자의 경우 30일 이내 퇴소로 급여제공계획수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미실시를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이었으나 2021년 시설평가매뉴얼에서 신규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수립이 급여개시전(입소당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용종료 상담 실시 및 연계기록지 작성 및 제공이 필수로 이뤄져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 단,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입소하여 아직 미작성인 경우 이용종료 상담 및 연계기록지 미제공 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34(33) 수급자 청결서비스

Q103

목욕서비스 제공 시 목욕 전후에 바이탈 시인을 체크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제공기록지에 목욕 전·후 상태를 기록해도 되나요?

- 수급자의 상태 작성 시 반드시 활력징후(혈압, 맥박, 체온 등)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입술·손톱 색깔, 피부손상 등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상태 등을 관찰하여,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 1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의 작성방법을 참고, 목욕 제공 전·후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상없음, 얼굴 창백함, 오한 있음 등’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체크 불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34(33) 수급자 청결서비스

Q104

주 1회 목욕급여 제공 시 주 1회만 충족하면 시행요일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나요?

- 주 1회 목욕을 매주 월요일 제공하다 사유가 생겨 수요일으로 바뀌 제공했다면 주 1회 목욕서비스제공은 인정되나 평가 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므로 계획과 다르게 제공될 경우 사유가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 급여제공계획 확인사항 :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시설급여 평가지표35(34) 식사제공

Q105

보건소 식단표를 따라 제공하되 죽을 먹어야 하는 수급자가 있어 식단표에 죽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정되나요?

- 밥 대신 죽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사정 결과 및 급여계획에 따라 씹는 기능이나 소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제공한다면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Q106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입소 당시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작성한 등급외자 입소자가 입소 이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재작성하는지 평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급자의 배설상태 등이 최초 입소 시점과 비교하여 변화가 있다면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다시 작성하여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Q107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재입소시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 따라서,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Q108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하여 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입소한 수급자가 입원 후 퇴원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작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장기간 입원 후 복귀했다면 입원 전 상태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자가 적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설양상의 변화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Q109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도 집중배설관찰기록표에 대소변량을 기입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기준①의 집중배설관찰기록표는 신규 수급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72시간동안 매 시간 섭취 및 대소변량, 기저귀 및 옷 교환(옷에 배설 실수한 경우)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집중배설관찰기록표의 작성은 신규 수급자의 배설관리를 위한 상태 파악이 목적이므로 매시간 기록하여야 하며, 기저귀 미이용 시 시간대별 배설여부만 체크할 수 있지만 기저귀 사용중인 수급자는 배설한 시간대 기록과 배설량도 확인하여 기입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Q110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 기저귀 교환 시간을 급여제공기록지 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 교환)란에 기입하거나 기관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기저귀 교환 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Q111 병원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시설에 신규 입소한 수급자나 유치도뇨관 삽입 상태로 타 시설에서 저희 시설로 신규 입소한 수급자의 경우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받지 못해 욕구사정 기록지에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처방에 따라 유치도뇨관을 관리한다'는 기준③에 대해 평가 시 인정되나요?

- 병원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신규 입소한 경우, 병원에서 삽입한 것은 의사처방에 따라 삽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처방전, 진단서 등이 없더라도 그 내용이 욕구사정기록지 등에서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 타 시설에 있다가 입소한 경우, 연계기록지에 유치도뇨관 삽입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도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7(36) 욕창예방

Q112 욕창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 기록해야 하는 항목에서 별도의 서식 없이 급여제공기록지에 욕창관리 체크, 욕창 발생여부 등 특이사항에 기록하여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욕창발생 고위험 대상자의 욕창발생여부 관찰 기록은 급여제공기록지 욕창관리에 체크 후 특이사항에 관찰 결과를 기록 시 평가에서 인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7(36) 욕창예방

Q113

2시간마다 체위변경 실시내용 기록 시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기록해도 인정되나요?

-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양식도 인정하며 체위변경 날짜, 시간, 급여 제공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체위변경 시 참고 가능하도록 적용한 체위도 기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7(36) 욕창예방

Q114

통합적 사정의 욕창위험도 평가 시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욕창위험도 분기별 파악 중 1회로 중복인정 되나요?

- 분기별로 1회 이상 욕창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에 따른 연 1회 이상 욕창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것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분기별 각 1회 이상 실시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평가지표37(36) 욕창예방의 기준①과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의 기준③을 모두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7(36) 욕창예방

Q115

평가도구 욕창 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급자라도 스스로 움직임이 가능한 분, 간호사 판단 하에 체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체위변경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급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체위변경이 가능하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2시간마다 체위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편마비가 있는 수급자, 인지기능저하로 체위변경을 하지 않는 수급자 등 체위변경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가 욕창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 스스로 체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8(37) 욕창관리

Q116

욕창이 있으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도 체위변경 의무대상인가요?

- 욕창이 있는 수급자는 최소 2시간(수면시간 포함)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여 체위변경이 필요치 않다면 관련 근거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여 주 1회 이상 욕창변화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이미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도 평가지표37(36) 욕창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욕창 위험도 평가 결과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욕창위험도 파악, 욕창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8(37) 욕창관리

Q117

욕창관리기록의 '조치내용'은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 '조치내용'은 욕창관리에 대해 조치한 내용 기록 시 인정하며, 촉탁의 진료, 병원 진료, 보호자 연락, 간호(조무)사 처치 등 욕창관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9(38) 간호 및 의료서비스

Q118

월 중 입소자는 해당 월에 계약의사 진찰을 2회 이상 받지 못해도 문제가 없나요?

- 입소일 이전에 이미 계획된 계약의사 방문일정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평가 시엔 입·퇴소일은 제외하여 확인하나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최대한 진료를 제공받도록 노력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Q119

코로나19 관련 계약의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평가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 진찰이 어려운 경우 위기경보 경계단계 이상 외부인 출입통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 인정합니다(예를 들어 해당 기간에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방문은 금지되었으나 보호자 또는 자원봉사자 방문은 허용 등 적용기준이 다르다면 불인정).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급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20.3월부터 계약의사 유선진찰 및 처방에 대한 허용안이 마련되어있습니다.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해당사항 없음)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Q120

코로나19 관련 계약의사 유선진찰을 수행하는데 원외처방전 미발급 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인정되나요?

- 계약의사 유선진찰의 경우 원외처방전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평가지표39(38) 간호 및 의료서비스 기준① 계약의사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한다에 의해 유선진찰 내용을 간호일지 등에 적어주셔야 하며 해당 기록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합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시설급여 평가지표40(39) 투약 및 약품관리

Q121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타이레놀, 가스할명수 등)은 의사 처방 없이도 투약 가능한가요?

- 시설평가 시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을 수급자에게 투여 시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나 상비약의 경우도 약품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시거나 의사와 상의 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0(39) 투약 및 약품관리

Q122

수급자 외출, 외박 시 지침약에 대해 투약기록을 하나요?

- 현재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에서는 외출 및 외박 대장을 별도 지표로 평가하지 않으나 수급자가 외출, 외박하여 기관에서 투약 뿐 아니라, 프로그램, 계약의사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안전관리와 기관 내 감염예방관리를 위해서도 외출, 외박에 대한 기록관리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0(39) 투약 및 약품관리

Q123

어르신별 투약시간이 비슷하고 시간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 시간이 달라야 하나요?

- 평가에서 투약기록은 실제 제공시간을 기록하는지 평가하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여러 인원이 투약을 제공하는 경우, 투약제공자가 여러 인원인 것이 확인된다면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시간이 동일하여도 인정합니다.
- 다만, 소수의 직원이 다수의 수급자 모두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시간으로 작성했을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0(39) 투약 및 약품관리

Q124

간호사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간호사실 안에 있는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나요?

- 특정장소인 간호사실에 약을 보관하며 간호사실 안에 있는 약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가 없다면, '간호사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할 경우에만 개방'되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1(40) 기능회복훈련

Q125

모든 수급자에게 3가지 영역 훈련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의 훈련계획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각 영역별 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급여제공계획서에 기능회복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훈련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능회복훈련내용은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해야 합니다.
- 영역별 훈련 중 수급자 상태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경우 외상상태 등 근거가 확인될 시 인정되며 계획에 반영된 영역도 평가 당일 수급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제공을 하지 못할 시 관련 근거를 확인하여 미실시에 대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1(40) 기능회복훈련

Q126

기능회복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 해당 기준은 평가 시 급여제공계획서에 반영된 영역에 따라 관찰로써 확인하나 급여제공계획서에 기능회복훈련에 대한 내용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수급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누락의 경우 모든(3가지)영역에 대한 기능회복훈련 실시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27

신규입소자의 경우 물리(작업)치료의 평가 및 계획을 급여개시전(입소당일)까지 수행해야하는데 물리치료사가 연차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의 물리(작업)치료 지표는 물리(작업)치료사만 할 수 있도록 직제 규정을 하고 있어 물리(작업)치료사가 1명만 있어 휴가로 대직이 불가능할 경우는 휴가 후 복귀한 첫 날에 신규입소자의 물리(작업)치료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실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 물리(작업)치료 지표도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지표와 같이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마지막 휴일의 익일 작성 예외 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28

물리(작업)치료사 인력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물리치료 계획 및 평가를 다시 수립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42 물리치료에서 평가 및 계획 수립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른 것으로 단순 인력변경의 사유로 재수립할 필요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29

물리(작업)치료사 연차 시 예정된 작업치료를 못하게 되는데 평가 시 괜찮나요?

- 물리(작업)치료사의 휴가 등에 따른 부재로 급여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하면 평가 시 확인하여 미실시에 대해 인정하나 기관은 최대한 다른 날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지속적으로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기관 상황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30

물리(작업)치료사가 시설 내 1명인 경우 치료 평가 및 계획 수립, 물리치료 실시를 못함에 대해 연차휴가임이 확인되면 평가 시 충족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휴가에 포함되나요?

- 휴가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 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소요된 유급사유 의 경우 미해당)인 경우 인정합니다.
- 출산휴가는 근무인원이 없음에 따른 미실시를 인정하지만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직종은 물리(작업)치료사)을 통해 실시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31

수급자가 거부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계획에 따라 물리(작업) 치료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 물리(작업)치료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하나, 수급자의 거부 또는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실시하지 못했다면 물리치료일지, 급여제공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32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 기준①번의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는 물리(작업)치료를 하기 전, 물리(작업)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얻기 위해 물리 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33

수급자 현원 증가(11월 17명, 12월 30명)로 인해 12월 5일부터 30인 이상으로 물리치료사 고용하였습니다. 11월 입소한 수급자는 물리치료 평가가 30일 초과되었는데 불인정하나요?

- 12월부터 물리치료사 의무배치 기관으로서, 기존 입소자는 물리 치료사 고용월 이내에, 신규 입소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평가와 계획수립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그룹별로 프로그램 제공 후 프로그램 일지를 그룹별로 작성
해야하나요? 통합하여 기록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134

- 프로그램 계획은 분류된 그룹별로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횟수 등을 기록해야하며, 프로그램 실시 기록은 일자, 시간,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을 기록하며 그룹별 실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일지의 작성 방법은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계획하고 실시하였는지 확인되어야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Q135

-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 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주 3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진행이 어
려워 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3개 그룹인데 그룹별로 같은 날에 시간을
달리 진행해도 되나요? 프로그램 내용은 모두 달라야 하나요?

Q136

-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하며, 그룹별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같더라도 각 그룹별로 프로그램 제공 여부가 확인된다면 평가 시 인정합니다.
- 인지기능검사결과 등에 따라 그룹별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명은 같더라도 목표, 세부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Q137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과 여가 프로그램의 그룹이 동일해도 되나요?

-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인지기능검사결과 등'에 따라서, 여가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 등'을 반영하여 분류합니다.
- 예를 들어, 인지기능검사(MMSE 등) 결과를 토대로 그룹을 나누는 것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가 프로그램에서도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에 따라 인지기능을 고려하여 나눌 필요가 있다면 인지기능검사 결과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Q138 명절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 수급자에게 다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평가기준에 명시된 대로 활동 주기를 충족해야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 명절, 공휴일 등의 미실시 사유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Q139 인지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여가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가 실시해도 되나요?

- 2021년 시설평가 매뉴얼에서는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Q140

매번 똑같은 사유(거부, 와상, 인지장애 등)로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어르신들은 매번 불참사유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하나요?

- 최초 불참사유 작성 후 신체, 인지 상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경우(완전와상, 인지장애 등), 최초 작성 내용으로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모든 수급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음악 듣기 등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 및 제공을 권고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거부인 경우, 매번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설득해서 수급자가 가능한 한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사유가 계속 기록되어야 하며, 수급자의 요구 및 의견수렴과 사례회의 등에서 논의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4(42) 여가활동서비스

Q141

여가 프로그램을 주 1회 제공 시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 주 1회 실시한 것을 전체 그룹에 적용해도 인정되나요?

- 여가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그룹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한 번 실시한 것을 각 그룹별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생은 그룹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함

시설급여 평가지표44(42) 여가활동서비스

Q142

생신잔치는 여가활동서비스로 인정되지 않나요?

- 여가활동서비스는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 수급자 상태와 욕구에 맞게 그룹화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 수급자를 위한 행사로 진행되는 생일잔치 활동은 여가활동서비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4(42) 여가활동서비스

Q143

기관에서 시행하는 활동 중 생신잔치, 종교활동, 이미용봉사가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활동은 프로그램 관련 평가지표의 방향성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활동에 대해 평가지표 방향성에 따른 관련 지표를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기관 활동	생신잔치		종교활동	이미용제공
관련 평가지표	평가지표27(26) -①, ② 지역주민 참여 행사	평가지표12(11) - ①~③ 자원봉사	평가지표12(11) - ①~③ 자원봉사	평가지표12(11)- ①~③ 자원봉사 (이미용 비급여항목 수급자 미청구 확인)

- 한 활동에 대해 여러 지표 및 기준 중복적용 시 불인정

COVID-19

Q144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부강사 출입을 제한하고 내부직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감염확산의 우려로 수급자가 거부하는 등 그룹별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데 이 경우 프로그램을 미실시해도 인정되나요?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